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63

발의연월일: 2025. 6. 5.

발 의 자: 한정애·이수진·이강일

부승찬 • 정성호 • 조인철

정춘생 · 김주영 · 양문석

강준현 • 박홍근 • 박지원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 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 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 중 "이 절 및 제10절의4"를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26조의2"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호의2"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에 부양자녀에 따른 금액(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50만원, 2명인 경우에는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5의2.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100분의 5
- 나.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100분의 10

다.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100분의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격) ① (생 략)	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2
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	
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	<u>.</u>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	나
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이하 <u>이 절 및 제10절의4</u>	<u>이 절,</u> 제10절의4
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및 제126조의2
가 있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 득세법 .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 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 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 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 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 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 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u>20</u>
28년 12월 31일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호
<u> 의2</u>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 5. (생 략) <신 설>

<u>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u>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u>합계액 × 100분의 5</u>
나.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u>합계액 × 100분의 10</u>
다.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6. • 7. (생략)

- ③ ~ ⑨ (생 략)
- ①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 등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 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 2. (생략)

연간합계액 × 100분의 20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①
연간 250만원(해
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 부양자녀에 따른 금액(부
양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50만
원, 2명인 경우에는 100만원, 3
명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
<u>을 더한 금액</u>

1. • 2. (현행과 같음)